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 매입 협조 청원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원번호 : 48
- 청 원 자 : 민중규 외 5,944명
- 소개의원 :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접 수 일 : 2022년 1월 6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17일

2. 청원요지

-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는 시립대 및 망우로 인접 상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도로 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이 곳에 위치한 국유지(용도폐지된 파출소 부지)는 한국자산공사(캠코)에서 공매처분할 계획으로, 당초 해당 부지를 국가에 증여한 (재)제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 도로를 조성한 후 서울시(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인바, 공매처분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본 재단에서 매입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원 요지

- 청원인 외 5,944명은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위치한 공매대상 국유지에 대하여 이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동대문구)하는 공익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에서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임.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는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본 청원의 채택이 필요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청원인이 매입 협조요청한 토지는 휘경파출소로 활용하다 용도폐지되어 2021년 7월에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되어 현재 활용부서 소요조회 중에 있음(2021년 10월~).
-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 된 국유지의 활용 및 처분 등은 국유재산 위탁관리 총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관 법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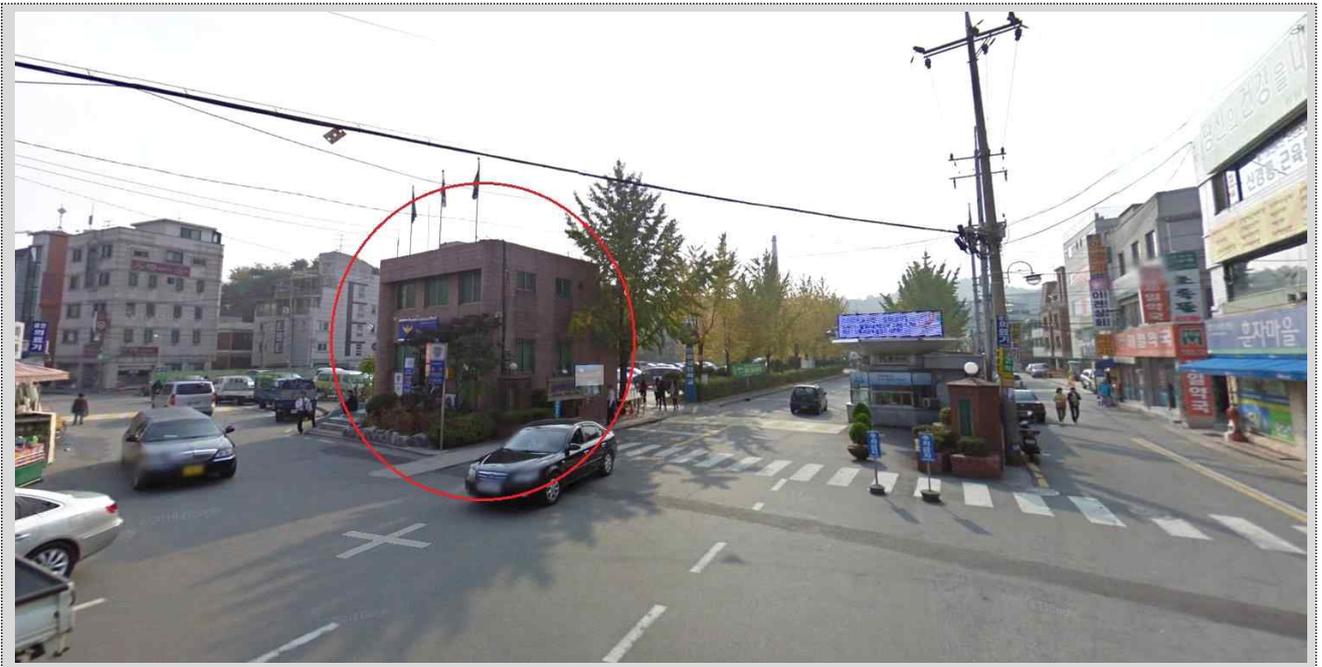
5. 검토 의견

가. 청원 취지 및 필요성

- 본 청원은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위치한 국유지*(이하 “청원부지”)를 공익적 목적(도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3-8 대지 93㎡, 소유자: 국가(기획재정부), 경찰청(휘경파출소)에서 사용 후 2021.7.28. 용도폐지, 현재 활용부서 소요조회 중(등기사항증명서 참조).

< 청원부지 현황 >



※ 청원인은 지역 치안문제 해소를 위한 파출소 설치를 목적으로 청원인 중 재단이 청원부지를 국가에 증여(1979. 11.29.)했던 부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 청원인은 교통체증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는 청원부지를 재단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조성하고 종국적으로 서울시(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 청원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본 수익계약 매입 추진 협조 청원은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법적 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제86조)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제5조)에서는 국민은 청원기관(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59조)에서 이외의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

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에서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제4조), 청원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한편, 「국유재산법」(제43조)에서는 일반재산의 처분은 공고를 통한 일반 경쟁으로 하되, 필요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으로 28개의 호를 열거(조문 별첨)하면서,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나,
 - 제17호의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생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 16. (생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이하 생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전문 별첨>

다. 검토의견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유지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국유재산법」 제43조 참조),
 - 국유지에 대한 처분 방식의 결정이 청원기관(서울특별시)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재무국 의견 참조)고 할 것이며(「청원법」 제5조제5호 참조),
 - 청원부지는 서울시유지 간선대로 및 구유지 도로로부터 청원 재단 소유의 대규모 시설(삼육서울병원, 삼육보건대학교 등) 진입 초입에 3면이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는 도로접합 대지로써 재단(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청원법」 제6조제5호 및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4조제5호 참조).

< 청원 부지 및 주변 현황 >



※ 우하단 불투명 구역(삼육서울병원, 삼육보건대학교 등)은 청구 재단인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유임.

○ 따라서 청원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 받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에 따른 취득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

- 명확한 근거 없이 재단에서 청원부지를 예외적인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입(협조)을 구하고 있는 본 청원은, 공익 목적 사용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바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유재산법·령, 지방자치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등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청원부지는 3면이 청원인 재단 소유 부동산에 맞닿아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써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재단에서 직접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 청원 재단이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동대문구 또는 필요시 서울시가 공공용재산(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청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청원 재단이 본 청원부지 취득 및 도로조성 자금을 동대문구에 기부하여, 동대문구에서 공공용재산으로 수의계약 취득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2012. 6. 19.>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6.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이하 “국유지개발목적회사”라 한다)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

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 13.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4.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 1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6.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한센병 환자가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집단으로 정착한 국유지를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있는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체계관리계정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시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시 외의 지역[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계속하여 경작한 그 실경작자

2)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국유지의 취득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그 전체 유통시설 부지 면적의 50퍼센트(부지 면적의 50퍼센트가 2천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

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0.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3.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4.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25.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한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28.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라목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일 것

나.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라. 다목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목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다목·바목·사목·자목·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

⑤ 제3항제2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⑥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